

신규 항만 기본계획 [진촌항]  
**전략 환경영향평가서**  
[초안 요약문]

2024. 1.



# 제1장 계획의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### 가. 계획의 배경

- 본 계획은 “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(2021, 해양수산부)” 후 「항만법 시행령」 개정(2022.07)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 진촌항을 대상으로 항만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
- 진촌항은 지방어항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어항으로써 항내 지속적인 개발사업 등 (어촌뉴딜 300사업, 요트계류시설 조성)을 통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음
- 수요예측 결과, 2040년까지 여객·차량·화물 수송량의 증가율은 크지는 않으나,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, 관광객·도서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차도선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
- 특히, 진촌항을 이용하는 재적 및 외래어선은 대부분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, 항내 부잔교 시설을 통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진촌항을 이용하는 총 어선 척수에 비해 소형 접안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직립식 소형선부두 개축이 필요함
- 또한, 어선의 수리 및 대피를 위한 선양장을 확보하는 어업기능시설의 정비와 항내 정온도 및 통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(방파제) 연장 계획이 필요함

### 나. 계획의 목적

- 기본목표
  - 신규 지방관리연안항 지정에 따른 여객, 화물, 어업의 복합기능 항만으로 육성
- 세부 육성 전략
  - 방파제 연장을 통한 항내 정온유지 및 항만활동 환경 개선
  - 여객 및 차도선부두 확충을 통해 관광객·도서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
  - 직립식 소형선부두 및 선양장 개축



(그림 1.1-1) 계획대상지 위치도

## 1.2 관련 법적근거

### 가.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

-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은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,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,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

<표 1.2-1>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

<p>「항만법」 제5조(항만기본계획의 수립)</p> <p>①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(이하 “항만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「항만법」 제7조(항만기본계획의 변경)</p> <p>①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,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·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·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「항만법」 제8조(항만기본계획의 고시)</p> <p><u>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자료 : 「항만법」 제5조 및 제7조, 제8조

※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

- 「항만법」 제98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봄

<표 1.2-2>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의제사항

<p>「항만법」 제98조(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</p> <p>2. 제44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</p>
---

자료 : 「항만법」 제98조제2항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[별표 2]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
- 진촌항은 환경영향평가 등 기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규모는 기존 어항시설 면적(육역)을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
- 또한, 「항만법」 제85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의제되므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2] 비고 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

<표 1.2-3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라. 항만의 건설사업	5)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	「항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차. 개간공유수면 매립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· 개발기본계획 규모 : 총 20,872㎡ [기존 시설(육역) 14,354㎡ + 신규 시설 6,518㎡]		

비고 1.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.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.

자료 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2]

## 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### 가. 추진경위

- 1992.02.23. : 진촌항 지방어항 지정
- 1994.02.17. : 진촌항 개발계획 수립
- 2015.08.20. : 진촌항(지방어항) 개발(정비)계획 변경 고시[경상남도 고시 제2015-368호]
- 2019.05.09. : 통영시 어촌뉴딜 300사업(산등항 등 5구역) 기본 및 실시설계
- 2020.10.22. : 통영도시관리계획(시설:항만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- 2021.03. :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
- 2021.05. :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(능양항, 진촌항) 조성사업 준공
- 2021.06.28. : 「항만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- 2021.12.14. :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  
(타당성 검토기간 : 2021.03.31. ~ 2021.12.17.)
- 2022.03. : 진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
- 2022.07.04. : 「항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[대통령령 제32763호, 시행 2022.07.05.]
  - 국가관리연안항 신규 지정 : 격렬비열도항
  - 지방관리연안항 신규 지정 : 진촌항
- 2022.07.27. : 신규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
- 2023.08.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
(결정내용 공개기간 : 2023.08.30. ~ 09.12.)

### 나. 향후계획

- 공고·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
-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(환경부)
-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
- 신규 항만기본계획 고시(해양수산부)

## 1.4 계획의 내용

가. 계획명 :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

나. 계획의 수립 및 승인기관 : 해양수산부장관

다. 계획의 범위

### 1) 시간적 범위

- 기준연도 : 2024년
- 목표연도 : 2030년

### 2) 공간적 범위

-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

라. 계획의 규모

- 「항만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진촌항의 신규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아래의 신규시설을 2030년까지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함
  - 계획면적 : 20,872㎡ [기존시설(육역) 14,354㎡ + 신규시설 6,518㎡]
  - 외곽시설 : 100m (동방파제, 서방파제)
  - 계류시설 : 334m (소형선부두, 여객부두, 차도선부두, 선양장)
  - 매립반영 요청면적 : 6,518㎡ (신규시설)
  - 기 타 : 준설 1식

<표 1.4-1> 진촌항 항만기본계획(안)

구 분	협의대상 규모		전체 계획규모	비 고
	기 협의 <sup>주)</sup>	금회 협의대상		
계획면적	-	20,872㎡	20,872㎡	기존 및 신규시설
외곽시설	-	100m	100m	-
계류시설	-	334m	334m	-
매립면적	6,518㎡			매립반영 요청
기 타	준설 1식			-

주) 기 협의 : 항만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규모

- 진촌항은 기존 어항시설로서 「어촌어항법」에 따른 어항의 지정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어항시설 면적 중 육역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에 반영함  
[기존 어항시설 면적 : 109,830㎡(육역 14,354㎡ + 해역 95,476㎡)]

**마. 주요 계획내용**

**1) 방파제(신규 연장 100m, 기존 마루높이 증고 272m) - ①, ②**

- 태풍 내습시 진촌항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하여 동방파제 신규 연장(L=70m), 서방파제 신규 연장(L=30m)을 계획함
- 또한, 태풍 내습시 월과방지를 위하여 기존 동방파제(L=180m)와 서방파제(L=92m)의 마루높이 증고(H=0.8m)를 계획함

**2) 소형선부두(60m) - ③**

- 유류 보급시설 주변의 지반 침하 및 전면 도로 폭 협소로 인한 어업 기자재 양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선부두 개축(60m)을 계획함

**3) 여객부두(30m), 차도선부두(90m), 소형선부두(114m) - ④**

- 관광객과 도서민의 안전한 입도와 편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노후화 된 여객부두(30m), 차도선부두(90m)를 보완하고, 항내 소형어선 접안시설 및 피항 공간을 확보를 위한 소형선부두 개축(114m)을 계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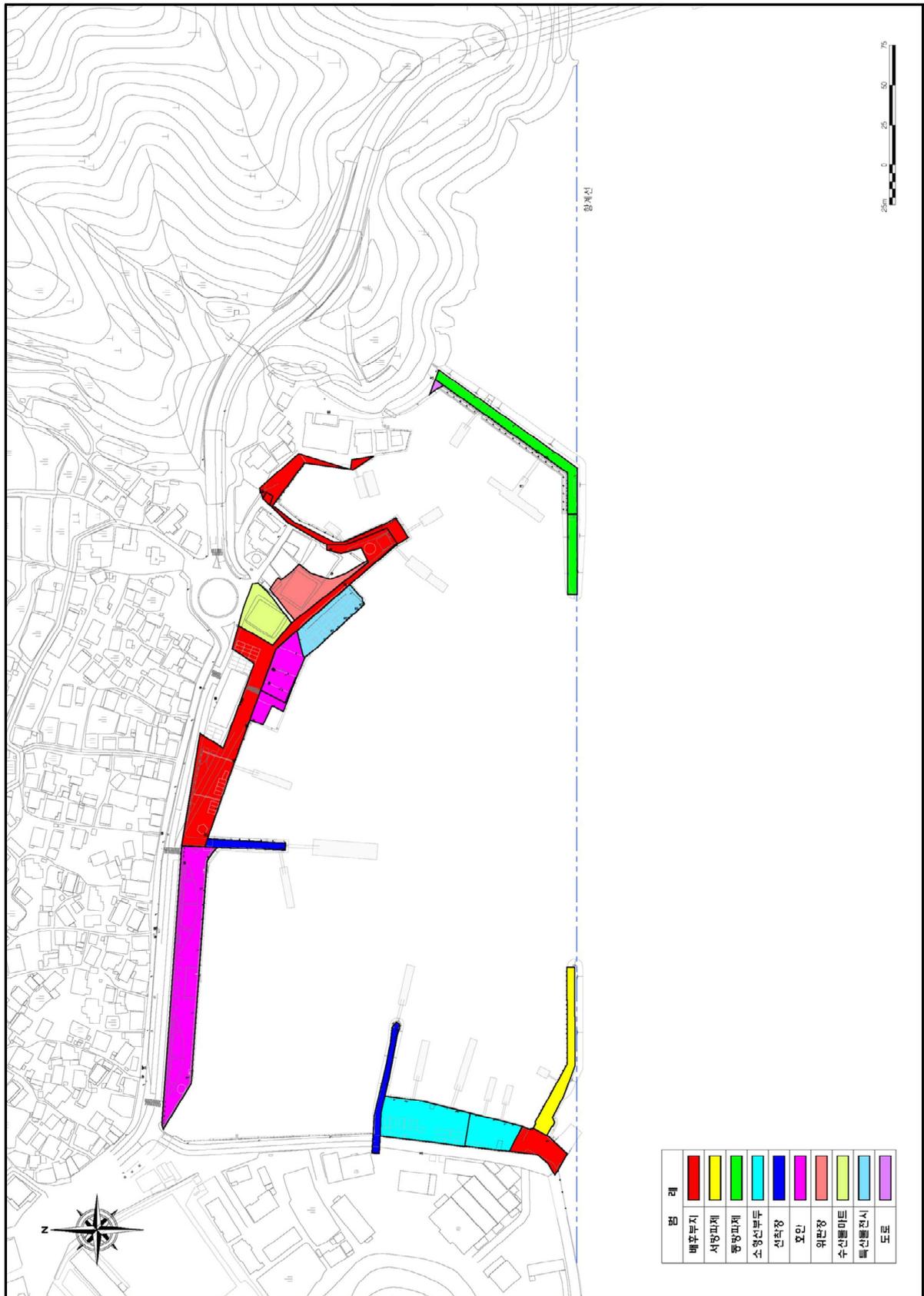
**4) 선양장(40m) - ⑤**

- 항내 파랑 및 고조로부터 어선 피항 시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선양장(40m)를 계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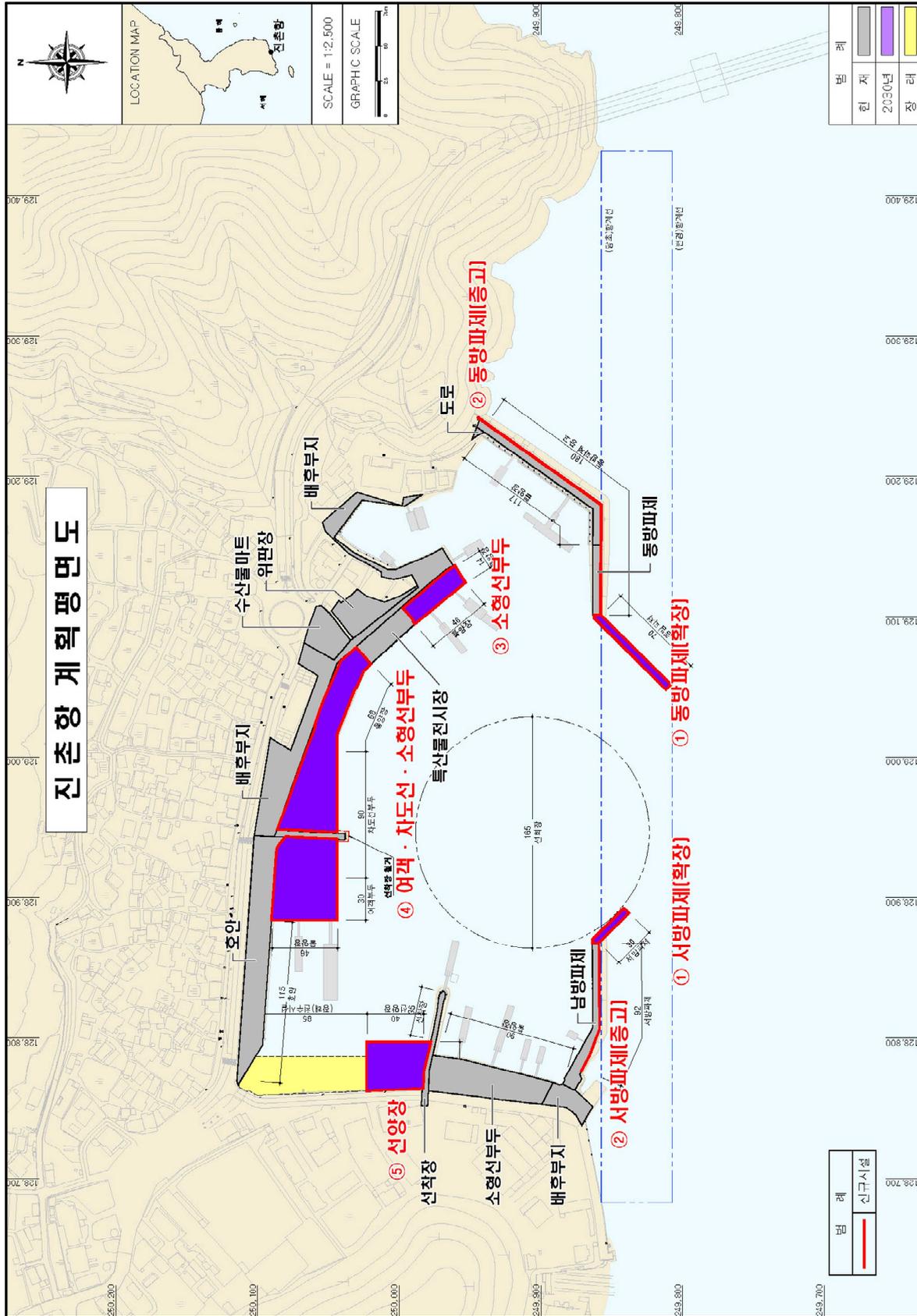
바. 세부 계획규모 비교표

<표 1.4-2> 진촌항 세부 계획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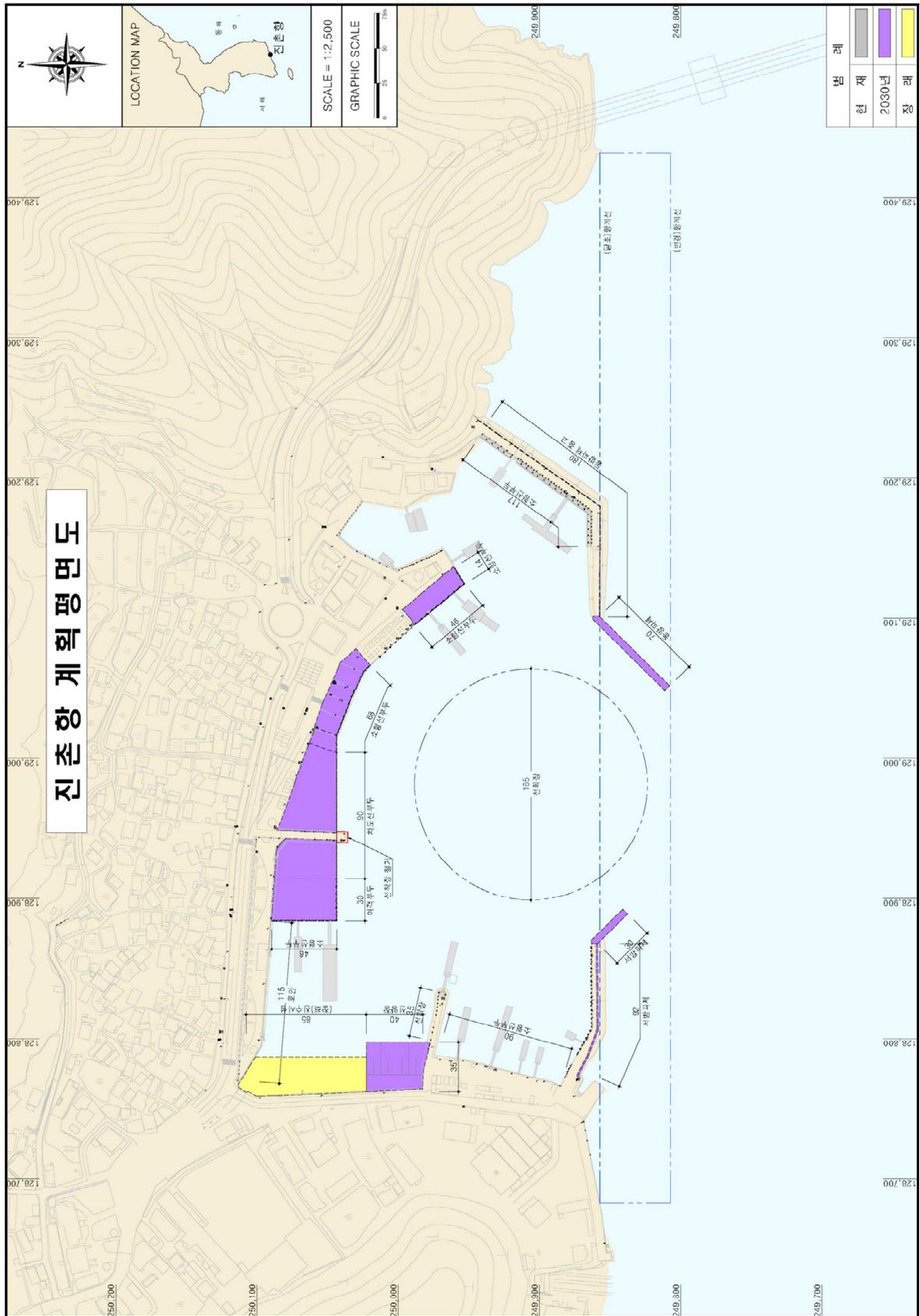
구 분			금회 협의대상 규모			비 고
			기존시설	신규시설	계	
계획 규모 (m)	외곽시설	동방파제	180	70	250	신규 추가 ①,②
		서방파제	92	30	122	
		소 계	272	100	372	-
	계류시설	소형선부두	207	174	381	신규 추가 ③,④
		선착장	120	-85	35	-
		호안	261	-146	115	-
		여객부두	-	30	30	신규 추가 ④
		차도선부두	40	-40	0	
			-	90	90	
		선양장	-	40	40	신규 추가 ⑤
		소 계	628	63	691	-
계획 면적 (㎡)	기본시설	배후부지	4,312	-	4,312	-
	외곽시설	동방파제	1,101	360	1,461	매립반영요청 360㎡ ①,②
		서방파제	648	160	808	매립반영요청 160㎡ ①,②
	계류시설	소형선부두	1,868	883	2,751	매립반영요청 883㎡ ③,④
		선착장	560	-	560	-
		호안	2,709	-	2,709	-
		여객부두	-	1,355	1,355	매립반영요청 1,355㎡ ④
		차도선부두	893	3,095	3,988	매립반영요청 3,095㎡ ④
		선양장	-	665	665	매립반영요청 665㎡ ⑤
	기능지원시설	위판장	828	-	828	-
		수산물 마트	659	-	659	-
		특산물 전시장	748	-	748	-
	임항교통시설	도로	28	-	28	-
	소 계		14,354	6,518	20,872	전체 매립반영요청 6,518㎡
	기타	-		준설1식		-



(그림 1.4-1) 기존 어항시설 현황도



(그림 1.4-2) 진촌향 계획평면도(안) 및 신규시설 구분도



(그림 1.4-3)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계획평면도(안)

## 제2장 지역개황

환경관련 보호지역(근거법)	통영시	계획대상지
○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(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)	×	×
○ 해양보호구역 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)	○ 해양생태계보호구역 (통영선촌마을)	○ 해당없음 - 동측 약 20.0km 이격
○ 해중경관지구(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 제28조)	×	×
○ 특정도서 (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)	○ 총 36개소 분포 - 사랑면 3개소 분포	○ 해당없음 - 서측 약 5.5km 이격
○ 자연환경보전지역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호)	○ 676.13km <sup>2</sup> 분포	○ 계획대상지 전면 해역 및 금회 신규시설 위치
○ 수산자원보호구역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)	○ 476.82km <sup>2</sup> 분포	○ 계획대상지 전면 해역 및 금회 신규시설 위치
○ 수산자원관리수면(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8조)	○ 삼덕리-미남리 해역 일원 바다목장 분포	×
○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(「습지보전법」 제8조)	×	×
○ 생태·경관 보전지역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)	×	×
○ 생태계 변화관찰지역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31조)	×	×
○ 야생생물 보호구역 (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)	○ 총 6개소 분포	×
○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및 철새도래지 (현지 및 문헌 조사결과)	○ 사랑도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I·II급 종 총 4종 분포	○ 현지조사를 통해 수달 (I급) 서식이 확인됨
○ 자연공원(「자연공원법」 제4조, 제18조)	○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함	○ 해당없음 - 동측 약 8.0km 이격
○ 어장관리해역(「어장관리법」 제5조)	×	×
○ 상수원보호구역(「수도법」 제7조)	○ 총 2개소 분포	×
○ 수변구역 (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)	×	×
○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(「산림보호법」 제7조)	×	×
○ 대기관리권역 (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)	×	×
○ 악취관리지역(「악취방지법」 제6조)	×	×
○ 백두대간 보호지역(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)	×	×
○ 수질오염 총량관리구역(「물환경보전법」 제4조)	×	×
○ 연안오염 총량관리구역(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)	×	×

##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

### 3.1 평가항목 선정

- 본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 1]의 “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” 및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3-72호”에 따라 계획 수립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함

<표 3.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 사유

평가항목		선정여부	선정사유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선정	·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	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선정	· 대안검토를 통한 계획수립	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 서식지보전	선정	· 생태·자연도, 각종 보호구역 분포 파악 · 매립 등으로 인한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의 영향 ·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
		지형 및 생태축 보전	선정	· 지형·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· 매립으로 인한 조간대, 갯벌,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
		자연경관	선정	· 자연경관 현황 파악 ·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분석
		수환경 보전	선정	· 주변해역의 해양물리, 해양수질 및 퇴적물 현황 파악 · 계획시행에 따른 해수유동, 침식 및 퇴적, 해수 교환율 변화
	생활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선정	· 기상 : 타항목 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· 대기질, 온실가스, 소음·진동 등 현황 조사 ·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·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, 소음·진동, 수질 영향 → 항목별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
	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선정	·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영향 · 오수, 폐기물 처리계획은 환경기준 부합성(수환경 보전)과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항목에서 제시
	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선정	· 행정구역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·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 영향
	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선정	·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

### 3.2 평가범위 설정

- 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, 2023.02, 환경부” 및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3-72호” 을 기초로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

<표 3.2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평가항목		평가 대상지역	설정사유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	·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	
	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· 계획대상지	· 대안검토를 통한 계획수립	
입지의 타당성	자연환경의 보전	자연환경 자산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자연환경자산 변화 예상 지역	
		생물다양성· 서식지보전	육상 동식물상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0.1~0.3km 내 · 계획시행시 육상동·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
			해양 동식물상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.0km 내 · 계획시행시 해양동·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
	자연경관	지형 및 생태축 보전	지형·지질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계획 시행시 조간대, 갯벌,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
		경관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지형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
	수환경 보전	해양물리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.0km 내 · 해수유동, 침식 및 퇴적, 해수 교환율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
		해양수질 및 퇴적물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2.0km 내 · 계획 시행시 부유사화산 등 해양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
	생활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기상	·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 · 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하여 위치한 기상대
			대기질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1.0km 내 ·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
			온실가스	· 계획대상지 ·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
수질		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공사인원에 의한 오수 발생	
소음·진동			· 계획대상지 경계기준 0.5km 내 ·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·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
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		
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(친환경적 자원순환)		·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· 공사인원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	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· 계획대상지 ·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	



(그림 3.2-1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## 제4장 대안의 설정

### 4.1 대안의 설정 및 내용

#### 가.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- 대안이란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내용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, 대안별 설정된 시나리오를 비교·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함
- 본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의 설정은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”의 대안 종류(유형) 중 본 계획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함
- 본 계획은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진촌항에 대해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 비교, 수요·공급, 입지 등 3개의 대안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

<표 4.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여부

대안 유형	대안 선정 방법	선정여부
계획 비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○
수단·방법	○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·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	-
수요·공급	○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○
시기·순서	○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
입지	○ 공간구상 및 전략, 입지,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○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 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	○
기타	○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

자료 : 1.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3-72호  
2.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, 2023.02, 환경부

**나. 대안별 비교·검토**

- 대안 선정 유형 중 “계획비교” 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를 “수요·공급” 은 진촌항 개발계획 수요검토 내용을 “입지” 의 경우 현지 및 장래 여건, 기존시설과의 연계성, 주변개발 여건, 수요요청 반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였음

**<표 4.1-2> 대안의 내용**

대안종류		대안내용
계획비교	1안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
	2안	○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Action)
수요·공급		○ 개발계획 수요검토 결과
입지	1안	○ 동방파제 70m, 여객부두 30m, 차도선부두 90m, 선양장 40m (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시)
	2안	○ 동방파제 100m, 여객부두 30m, 차도선부두 90m, 소형선부두 174m, 선양장 40m, 항내준설 1식
	3안	○ 동방파제 70m, 서방파제 30m, 여객부두 30m, 차도선부두 90m, 소형선부두 174m, 선양장 40m, 항내준설 1식

**4.2 대안의 적정성 검토**

**가. 계획비교**

- 계획비교 대안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1안, No Action)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(2안, Action)를 비교하였으며, 계획대상지의 개발여건과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2안으로 선정하였음

**<표 4.2-1> 계획비교**

대안종류	대안 설정내용	대안의 적정성
계획비교	○ 대안 1 : 계획 미수립시 (No Action)	○ 관광객·도서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차도선 접안시설 확충 ○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소형 어선의 접안시설 정비 및 기능 강화 ○ 어선 수리 및 대피 공간 확보를 통한 어업기능시설 정비 및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개발
	○ 대안 2 : 계획 수립시 (Action)	

나. 수요·공급

- 금회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·공급 대안은 진촌항 개발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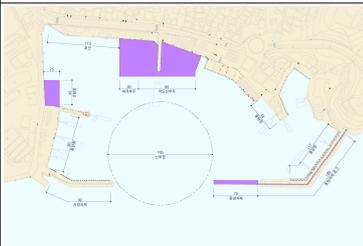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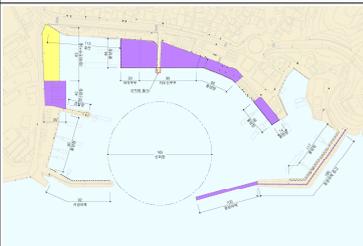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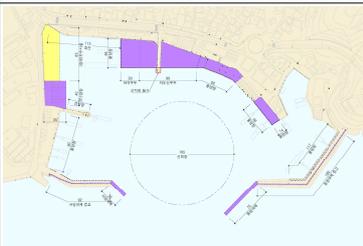
<표 4.2-2> 수요 대안 검토결과

No.	주요 요청사항	검토의견	검토결과
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박보급시설 확장 필요</li> <li>- 유류 및 생수 공급을 위해 하루 평균 20척 이상이 정박하는 장소로서 차량 진출입 곤란 및 양하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촌항 세력권 내 재적어선 (2021년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적어선 : 14척</li> <li>- 세력권 어선 : 132척</li> </ul> </li> <li>○ 최근 5년(2018~2022년) 간 어선수 및 유류공급량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급 어선수 : 250~350척</li> <li>- 유류 공급량 : 550~700D/M</li> <li>* 1D/M = 200L</li> <li>→ 변동폭은 크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장래 세력권 내 재적어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1년 총 146척</li> <li>- 2040년 총 141척(추정)</li> <li>→ 어선수는 소폭 감소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촌항 세력권 어선수의 변화가 적고 유류 보급에도 문제가 없는 바, 보급시설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되 안전사고 우려 및 협소한 공간을 고려하여 물양장 보강 및 확장을 반영함</li> </ul>
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도선 및 여객선 부두 필요</li> <li>- 화물 수송량 및 방문객수 증가, 응급의료시설 부족으로 응급상황 발생 대응을 위한 응급구조선 정박 부두 설치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촌항 여객수, 차량 및 화물 수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1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여객수 : 29만6천 명</li> <li>· 차량 : 9만4천 대</li> <li>· 화물 : 29만7천 톤</li> </ul> </li> <li>- 2040년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여객수 : 31만8천 명</li> <li>· 차량 : 8만3천 대</li> <li>· 화물 : 25만4천 톤</li> </ul> </li> <li>→ 증가율은 높지 않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여객부두 1개 선석으로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 관광객·도서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2척 이상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차도선 및 여객부두 설치를 반영함</li> </ul>
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수시설 필요</li> <li>- 방문객 및 도서민의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장소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해솔마당, 품미거리 조성 등 친수시설이 기 조성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조성된 친수시설 외 추가적인 개발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계획으로 반영함</li> </ul>

다. 입지

- 본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지 및 장래 여건,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평면배치계획을 입지의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·검토한 결과 3안을 최적으로 선정함

<표 4.2-3> 입지 대안 검토결과

구 분	1안	2안	3안
계 획 평 면 도			
계 획 규 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방과제 : 70m</li> <li>○ 여객부두 : 30m</li> <li>○ 차도선부두 : 90m</li> <li>○ 선양장 : 40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방과제 : 100m</li> <li>○ 여객부두 : 30m</li> <li>○ 차도선부두 : 90m</li> <li>○ 소형선부두 : 174m</li> <li>○ 선양장 : 40m</li> <li>○ 항내준설 1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방과제 : 70m</li> <li>○ 서방과제 : 30m</li> <li>○ 여객부두 : 30m</li> <li>○ 차도선부두 : 90m</li> <li>○ 소형선부두 : 174m</li> <li>○ 선양장 : 40m</li> <li>○ 항내준설 1식</li> </ul>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항계선 적용</li> <li>○ 어업활동 불가능 구역 최소화</li> <li>○ 어업기능 시설 확충을 위한 배후부지 확보</li> <li>○ 충분한 항 입구폭 확보로 선박 입·출항 및 접안 및 이안 안정성 확보</li> <li>○ 기존 선착장 철거 불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요요청 반영으로 민원 저감 예상</li> <li>○ 항내 정온 양호</li> <li>○ 항내 수면적 확보</li> <li>○ 어업기능 시설 확충을 위한 배후부지 확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요요청 반영으로 민원 저감 예상</li> <li>○ 항내 정온 양호</li> <li>○ 항내 수면적 확보</li> <li>○ 어업기능 시설 확충을 위한 배후부지 확보</li> <li>○ 충분한 항 입구폭 확보로 선박 입·출항 및 접안 및 이안 안전성 확보</li> </ul>
단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내 정온 불량</li> <li>○ 수요요청 반영사항 미흡하여 민원 발생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계선 확장 필요</li> <li>○ 항 입구폭이 좁아 선박 입·출항 안전성 불리</li> <li>○ 마을어업 일부 소멸로 보상비 발생</li> <li>○ 기존 선착장 일부 철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계선 확장 필요</li> <li>○ 마을어업 일부 소멸로 보상비 발생</li> <li>○ 기존 선착장 일부 철거</li> </ul>
사 업 비	-	○ 459.7억원	○ 459.1억원
선 정 안	-	-	◎
선 정 사 유	○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며, 항내 정온도 및 통항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3안을 최적으로 선정함		

## 제5장 결 론

- 본 계획은 “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(2021, 해양수산부)” 후 「항만법 시행령」 개정(2022.07)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 진촌항을 대상으로 항만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임
- 진촌항은 지방어항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어항으로써 항내 지속적인 개발사업 등 (어촌뉴딜 300사업, 요트계류시설 조성)을 통해 관광인프라 확충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음
-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 3개 대안(계획 비교, 수요·공급, 입지)을 선정하여 계획수립안, 개발계획 수요검토 결과 등의 대안별 검토를 실시한 결과, 항내 정온도 확보, 관광객·도서민의 원활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접안 시설 확충,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소형 어선 접안시설 정비 및 기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(Action, 수요조사에 의한 이해관계자 요청사항 반영 및 항내 정온도 및 통항안전성 확보)을 최종안으로 선정함
-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상 영향 검토결과,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안지형 변화, 부유사 확산, 해수유동의 변화와 건설장비 투입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
- 따라서, 공사시 부유사의 유출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 오탉방지막(Silt Protector) 설치, 호안 축조 후 필터매트(Filter Mat) 포설 및 매립 실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육상에 미치는 영향 저감을 위해 주기적인 살수 실시, 합리적인 장비투입 등을 실시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
- 한편, 본 계획의 준설토 투기부지는 남해서부권(광양항)의 광양 준설토 투기장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,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투기장 관리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업 착공 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임